

『高麗史』禮志 『書儀』 기사의 내용과 의의*

박 용 진**

목차

머리말

I. <書儀>의 현상과 유통

II. 『高麗史』禮志 『書儀』 기사의 내용

III. 고려시대 『書儀』 활용의 의례사적 의의

맺음말

머리말

『高麗史』禮志 凶禮條에는 『書儀』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다. 우리 학계에서는 이 서의에 대해 용어 소개 정도로 간단히 언급된 바 있지만 본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없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경우 敦煌에서 발견된 서의의 자료와 宋代 司馬光의 『書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국내에서 서의 관련 연구는 서지학이나 한문학에서 고문서의 서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단독연구)-A00021).

**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식이나 套式의 연구로 전개되었지만 문서 형식적 측면에서 다루어졌고, 신라나 고려시대에 서의가 활용되었는지의 여부조차 밝혀진 바 없다. 또한 서의라는 용어를 검토한 연구도 없거니와, 서의를 활용한 대외교류사적 연구도 없어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부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서의에 대한 연구의 선구는 김동욱의 古文書의 樣式的 研究로 볼 수 있으며, 『동국이상국집』의 表文을 분석하여 虛頭, 前謝事實, 中謝, 後謝事實書, 結尾, 謙辭, 謹白類로 구분한 것이 그에 해당한다.¹⁾ 서지학적 연구는 최승희의 고문서 연구가 있고, 이를 계승한 沈隅俊이 『經國大典』, 『大典會通』, 『六典條例』, 『國朝五禮儀』, 『儒胥必知』 등을 전존 고문서와 비교하여 하달, 상신, 상호문서로 3대분하여 套式을 정리한 바 있다.²⁾ 이들은 서의의 한 측면인 문서 형식과 용어에 대한 연구에 해당되며, 유교 오례와 관련한 儀注 측면에 대한 연구는 아니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된 서의를 통하여 대외관계, 사회문화적 비교 연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본과 중국에서의 서의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서의에 대한 연구의 선구는 1922년 일본의 內藤湖南이며, 1962년 이후 那波利貞, 山田英雄으로 이어졌다.³⁾ 초기 연구의 서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山田英雄은 다양한 서의를 살핀 위에 서의는 儀注의 항에 들어가고, 儀式의 부분에 넣어야만 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문서의

1) 김동욱, 『古文書의 樣式的 研究 序說(1)』 『人文科學』, 연세대인문과학연구소, 1967.

최승희, 『韓國古文書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2) 沈隅俊, 『韓國古文書의 套式』 『內賜本版式·古文書套式研究』, 一志社, 1990.

3) 內藤湖南, 『正倉院尊藏旧抄本に就きて』 『內藤湖南全集』 제7권, 筑摩書房, 1970; 那波利貞, 『『元和新定書儀』と杜友晋の編する『吉凶書儀』とに就いて』, 『史林』 45 / 1, 1962; 山田英雄, 『書儀について』, 『日本古代史攷』, 岩波書店, 1987(초판 1968).

양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문서의 양식과 儀注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伊藤美重子は 敦煌의 吉凶書儀를 통하여 凶儀에 대해서 살펴보고, 廣瀬憲雄는 古代 동아시아의 외교관계 해명을 위해 書儀와 外交文書を 비교하면서, 서의는 漢文書狀에 있어서 일종의 書札例이고, 수신과 발신자의 尊卑, 上下 관계에 의해 사용하는 어구 등이 세밀히 규정된다고 하였다.⁴⁾

중국에서는 周一良과 趙和平의 唐五代 書儀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⁵⁾ 周一良은 서의의 유형을 3분하였는데, 첫째, 12개월로 나누어 각 달에 맞는 내용을 12개 부분으로 나누어 안배한 것으로 朋友書儀로 명명하였고 서신의 범본이다. 둘째, 吉凶書儀, 셋째, 公私 양측의 다양한 사무에 관한 서신의 範本으로 구분하였다. 위의 서신의 범본 이외에 유교 오례의 儀注의 연구는 상당한 분량의 연구성과가 축적되었고, 최근에는 敦煌 서의류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에 까지 진행되었다.⁶⁾

국내의 연구로서 유교 오례의 儀注 측면의 연구는 길례, 군례, 빈례, 가례의 개별 연구가 상당히 집적되었고, 凶禮는 喪葬儀禮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에 그 연구가 집중되었다. 고려시대의 凶禮는 『高麗史』 예지 흥례조에 國恤, 陳慰儀, 祔太廟儀, 上國使祭奠贈賻弔慰儀, 先王諱辰眞殿酌獻儀, 上國喪, 隣國喪, 諸臣喪, 五服制度, 百官忌暇, 重刑奏

4) 伊藤美重子, 「敦煌の吉凶書儀にみる凶儀について」 『お茶の水女子大學人文科學紀要』 55, お茶の水女子大學, 平成14年, 51-65쪽. 廣瀬憲雄, 「書儀と外交文書—古代東アジアの外交關係解明のために」 『續日本紀研究』 360, 續日本紀研究會, 2006.2. 石見清裕, 「唐代凶禮の構造—『大唐開元禮』 官僚喪葬儀禮を中心に」 『福井文雅博士古稀記念論集 アジア文化の思想と儀禮』, 2005 ; 石見清裕, 「唐代墓誌史料の概観—前半期の官撰墓誌·規格·行狀との關係」 『唐代史研究』 10, 唐代史研究會, 2007.8 등도 참고된다.

5) 周一良, 趙和平, 『唐五代書儀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6) 張小艷, 『敦煌書儀語言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7.

對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凶禮는 『大唐開元禮』의 喪禮에 해당되는 것만을 확대 수용한 것으로,⁷⁾ 서의의 喪禮와 관련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고의 분석대상은 고려시대 경종6년(987), 문종 37년(1083)의 『書儀』 관련 기사이며, 이 『書儀』는 인종대 『古今詳定禮文』이 편찬되기 이전 단계에 활용된 의례서로 판단된다. 『高麗史』禮志에 실린 『書儀』의 분석을 통하여 고려시대 의례사 전개에 대한 계기적 이해에 조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 『書儀』의 현상과 유통

서의는 국내에서 연구된 바 없어 현재까지 생소하며, 용어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는 명확치 않다. 그래서인지 사전적인 용어 정의는 국내외에서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司馬書儀』의 서명만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위의 국내외 연구현황을 토대로 서의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정리하고, 한자문화권에 있어 서의의 현상과 유통을 살펴보기로 한다.

서의에 대한 국내외의 사전적 정의는 송대 司馬光의 『書儀』를 의미한다거나,公私의 書狀 형식에 관한 저서라고 하여,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 최근 중국의 周一良은 唐代 書儀의 類

7) 이희덕, 『유학사상의 실천적 전개』 『한국사』 16, 1993, 272쪽.

8) 【書儀】 書儀는 송나라 때 司馬光이 편찬한 公私의 書狀 형식에 관한 저서(『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9년, 1987쪽). 【書儀】 서명. 10권. 宋, 司馬光 撰. 司馬書儀라고도 한다. 諸種의 公문·書翰 등의 書式을 기록하였다. 隋唐의 志에는 蔡超書儀를 비롯해서 수십종을 저록하고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 책 뿐이다. 그 조목은 表奏公文私書家書式一卷, 冠儀一卷, 婚儀二卷, 喪禮六卷[四庫提要, 經, 禮類](『大漢和辭典』 권5, 1984 수정판, 5606쪽).

型을 <月儀類> 서신의 표준양식, 서신의 서식과 私家에서 자주 행해지는 예의 작법, 공사 사무에 관한 서신의 표준양식 등으로 3대분하였고,⁹⁾ 일본과 중국의 연구에 따르면 그 정의는, 서신과 예의의 양방면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書札體式, 典禮儀注를 의미한다.¹⁰⁾ 宋代 사마광의 『書儀』는 表奏公文私書家書式 一卷, 冠儀 一卷, 婚儀 二卷, 喪禮 六卷으로 구성되었고, 후대 한반도에서 수용한 주자의 『家禮』는 이것을 조금 增損하였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朱子도 사마광의 『書儀』를 매우 중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반도에 있어 『書儀』에 대한 자료는 잘 찾아지지 않고, 『高麗史』禮志 凶禮條에 『書儀』가 2회 인용되었다. 그 내용은 분명치 않지만 당시 고려의 특수성과 동아시아에서 통용된 서의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 한국 중세에 해당되는 고려시대에 동아시아의 제국의 외교문서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었고, 표방된 용어에 따라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일단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高麗史』禮志 凶禮條의 서의는 典禮儀注를 핵심내용으로 함에 따라 유교 五禮 즉, 凶禮에서 활용된 셈이다. 宋代 司馬光의 『書儀』는 表奏公文, 私書, 家書式 一卷, 冠儀一卷, 婚儀二卷, 喪禮六卷으로 구성되었다. 表奏公文에 사용되는 서의와 달리, 유교 오례 가운데 상례가 중심이 되는 凶禮의 서의를 고려 전후기의 계기적 이해를 위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의 서의라는 용어는 凶禮에 소용되는 문서의 서식 이외에 의주의 내용

9) 周一良, 『唐代書儀の類型』(池田溫編, 『講座敦煌五 敦煌漢文文獻』, 大東出版社, 1992; 1985년 발표).

10) 周一良, 趙和平, 『唐五代書儀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丸山裕美子, 『書儀の受容について』, 『正倉院文書研究』, 1996, 132-133쪽; 吳麗娛, 『唐禮摭遺-中古書儀研究』, 商務印書館, 2002. 那波利貞, 『元和 新定書儀』と杜友晋の編する『吉凶書儀』とについて, 『史林』 45/1, 1962.

을 포함한다.

1. 중국측 용례

중국측의 서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며, 敦煌 서의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 편이다. 서의의 저술은, 중국 남조의 劉宋시대 이후부터 비롯되고, 『隋書』 권33 『經籍志』 史部 儀注類에는 “內外書儀四卷 謝元撰, 書儀二卷 蔡超撰, 弔答儀十卷 王儉撰, 書儀十卷 王弘撰, 吉書儀二卷 王儉撰, 書儀疏一卷 周捨撰, 書儀十卷 唐瑾撰, 婦人書儀八卷, 僧家書儀五卷 釋曇瑗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隋書』에서 정의된 <儀注>는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며, 특히 周대에 吉凶賓軍嘉로 나뉘어 국왕을 도와 국가와 백성을 안집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더 나아가 秦漢 이후 제도로 정착된 이후 변화가 많고 그 전고가 불분명하여 견해가 분리되었고, 『隋書』 『經籍志』를 편찬하는 단계에서 현존하는 서의들을 모아 儀注편에 기재한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다.¹¹⁾ 또한 많은 서의가 산일되었지만 그러한 가운데 현행하는 서의를 정리한 셈이다.

『舊唐書』 『經籍志』 儀注에는 “弔答書儀十卷 王儉撰. 書筆儀二十卷 謝朓撰, 婦人書儀八卷 唐瑾撰, 皇室書儀十三卷 鮑行卿撰, 大唐書儀十卷 裴矩撰” 등 儀注 84부 1,146권 가운데 5종이 확인된다. 『新唐書』 『經籍志』 儀注에는 “王儉吉儀二卷又弔答書儀十卷, 皇室書儀七卷 鮑

11) 『隋書』 권33, 志28, “儀注之興 其所由來久矣 自君臣父子 六親九族 各有上下 親疏之別 養生送死 弔恤賀慶 則有進止威儀之數 唐虞已上 分之爲三 在周因而爲五 周官宗伯 所掌吉凶賓軍嘉 以佐王安邦國 親萬民 而太史執書 以協事之類是也 是時典章皆具 可履而行 周衰諸侯 削除其籍 至秦又焚而去之 漢興叔孫通定朝儀 武帝時始祀汾陰后土 成帝時初定南北之郊 節文漸具 後漢又使曹褒定漢儀 是後相承 世有制作 然猶以舊章殘缺 各遵所見 彼此紛爭 盈篇滿牘 而後世多故事在變通 或一時之制 非長久之道 載筆之士 刪其大綱 編于史志 而或傷於淺近 或失於未達 不能盡其旨要 遺文餘事亦多散亡 今聚其見存 以爲儀注篇”.

衡卿, 皇室書儀十三卷 謝朓, 書筆儀二十卷 謝允, 書儀二卷 唐瑾, 婦人書儀八卷 裴矩 虞世南, 大唐書儀十卷 裴莒, 書儀三卷, 鄭氏書儀二卷 鄭餘慶, 裴度書儀二卷 杜有晉書儀二卷”으로 儀注類는 100부 가운데 12부 정도이다. 『唐書』에서 書儀의 용어에 대한 구분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儀’와 ‘書儀’의 용어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아 후대에 ‘書儀’라는 용어로 통합되었다.¹²⁾ 宋代에 이르면 수당대의 다양한 서의류는 산일되어, 『宋史』『藝文志』 편찬 단계에는 唐朝의 裴莒, 鄭餘慶, 杜有晉, 五대의 劉岳, 宋代 司馬光 書儀八卷 만이 수록되었다.¹³⁾

한편 서의는 서신의 문서양식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는데, 특히 서신류는 子部 類書 또는 集部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역대 목록을 통하여 살펴본 서의는 經部나 史部の 禮類 또는 儀注類에 실려 있는데, 『隋書』 經籍志, 『舊唐書』 經籍志, 『新唐書』 藝文志, 『宋史』 藝文志 등 역대 목록은 모두 儀注類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서의는 단순한 서신의 양식을 넘어 대사회적 예속을 반영한 것으로, 서신 양식과 儀注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서의는 관련 목록류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부나 예부 儀注類에 포함되어 예의를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書儀>라는 용어는 <儀> 즉 제도와 예절을 반영한 儀注를 의미한다.

한편 敦煌 사본 100여점이 발견되면서 서의 연구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고, 그 가운데 敦煌本 鄭餘慶의 『大唐新定吉凶書儀』가 주목된다. 그 서문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예가 있으면 편안하고, 예가 없으면 위태롭다. 이로써 사대부 가에서는 길흉을 중히 쓴다. 그러나 여러 의례 경전이 착종되고 내용이

12) 陳靜, 『書儀的名與實』, 『文化广角』, 中國典籍與文化, 102-103쪽.

13) 『宋史』 권204, 藝文志157, 藝文3.

많아 끝내 찾아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현명한 선비로 하여 길흉서의를 편찬케 하고 세상에 전하여 소용이 되게 하였으니 실로 제요가 된다. 모두 10여가의 저술이 있는데 오직 京兆의 杜氏가 지은 것이 諸家の 儀禮와 견주어 행해진지 78년이 되었다.¹⁴⁾

이로 보아 『大唐新定吉凶書儀』 역시 여러 의례 경전을 기본으로 하여 吉凶書儀를 편찬하여 실용을 구한 것으로, 儀注 예절의 통칭임을 알 수 있다. 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年敍凡例第一, 節侯賞物第二, 公移平闕第三, 祠部新義第四, 諸色牋表第五, 寮屬起居啓第六, 典史起居啓第七, 吉凶凡例第八, 四海吉書第九, 內族吉書第十, 外族吉書第十一, 婦人吉書第十二, 僧道吉書第十三, 婚禮儀注第十四, 凶禮儀注第十五, 門前禮敎第十六, 起復爲外官第十七, 四海弔答書第十八, 內族吉喪書第十九, 僧道凶書第二十, 哀國奉刷第二十一, 官遭慶遣使赴闕第二十二, 勅使弔慰儀第二十三, 口弔儀禮第二十四, 諸色祭文第二十五, 衰服制度第二十六, 凶禮凡例第二十七, 五服制度第二十八, 婦人出家嫁爲本家父母服義圖第二十九, 公卿士庶內外族殤服義圖第三十.

『大唐新定吉凶書儀』 역시公私 서신의 양식과 儀注의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권2, 4, 14, 15, 16, 23, 24, 26, 28, 29, 30은 순수한 상장의례 중심의 儀注에 해당된다. 다음은 劉岳의 『吉凶書儀』 二卷이 주목된다¹⁵⁾. 劉岳은 五代 後唐 明宗代(925-933)에 鄭餘慶의 서의를 비

14) 周一良·趙和平, 『敦煌寫本鄭余慶『大唐新定吉凶書儀』殘卷研究』, 『唐五代書儀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179-190쪽, “人之有禮則安 無禮則危 此識材通明于儀禮 是以大夫之家 吉凶之重用 而諸禮經繁綜浩大 卒而難以檢尋 乃有賢士撰集纂要吉凶書儀 以傳世所用 寔篤濟要 凡有十餘家著述 有京兆杜氏制撰 比諸家儀禮 則今之行用七十八矣”.

15) 『五代史』 권55, 雜傳43, “劉岳字昭輔洛陽人也 唐民部尙書政會之八代孫 崇龜崇望其諸父也 岳名家子 好學 敏于文辭 善談論 舉進士 事梁爲左拾遺 侍御史 末帝時爲翰林學士 累官至兵部侍郎 梁亡貶均州司馬 復用爲太子詹事 唐明宗時 爲吏部侍郎……岳祕書監 其後李愚爲相 遷岳太常卿 初鄭餘慶嘗採唐士庶吉凶書疏之

못한 고급의 서적을 산정하여 『吉凶書儀』를 편찬하였다. 따라서 당시 唐代 鄭餘慶의 서의 등이 전존하는 한편 다양한 서의가 있었지만, 오대에 접어들면서 의례가 흩어지고 오류가 많아 재편찬한 셈이다. 이상의 서의의 편찬시기는 鄭餘慶의 『大唐新定吉凶書儀』는 元和年間(806-820)에 편찬되었고, 張敖의 『新集諸家九族尊卑書儀』는 鄭餘慶의 <서의>를 취재해서 852년경 찬술한 것이다. 이들의 유전 상황은 중국 宋朝 王堯臣 등이 찬술한 『崇文總目』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崇文總目』 편찬 시점인 景祐年間(1034-1038)에는 당대 이래 裴蒞, 鄭餘慶, 杜有晉, 劉岳의 『書儀』는 이미 산일되어 참고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즉, 오대의 전란을 지나면서 세속에서 활용된 서의류가 소멸된 모습을 전한다.

한편, 서의는 사회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고, 佛家에서도 사용되었다. 書儀의 저술은, 남조의 유송시대 이후부터 비롯되고, 『隋書』經籍志 史部 儀注類에 다양한 書儀가 수록되어있다.¹⁷⁾ 『隋書』經籍志에 수록된 서의 가운데 『僧家書儀』 五卷이 있다. 이 『僧家書儀』의 찬자 曇瑗은 太建年間(569-582) 住寺에서 82세로 입적하였으며, 그의 저

式 雜以當時家人之禮 爲書儀兩卷 明宗見其有起復 冥昏之制 歎曰 儒者所以隆孝悌而敦風俗 且無金革之事 起復可乎 婚吉禮也 用于死者可乎 乃詔岳選文學通知古今之士 共刪定之 岳與太常博士段顥 田敏等增損其書 而其事出鄙俚 皆當時家人女子傳習所見 往往轉失其本 然猶時有禮之遺制 其後亡失 愈不可究其本末 其婚禮親迎 有女坐婿鞍合髻之說 尤爲不經 公卿之家 頗遵用之 至其久也”.

16) 『四庫全書』史部14, 崇文總目권3, 儀注類, “儀注類 以下原卷十六 昔漢諸儒得古禮十七篇 以爲儀禮 而大射之篇 獨曰儀……秦漢以來 世有損益 至于車服禮器 有司所記遺文故事 凡可錄者 皆附于史官云 共一十八部 計一百十一卷……書儀三卷 闕 裴蒞撰, 書儀二卷 闕 鄭餘慶撰……書儀二卷 闕 杜有晉撰……新定書儀二卷 闕 劉岳撰”.

17) 『四庫全書』經部4, 書儀, 禮類六, 提要, 書儀十卷 宋司馬光撰 考隋書經籍志 謝元有內外書儀四卷 蔡超有書儀二卷 以至王宏王儉唐瑾 皆有此著 又有婦人書儀八卷 僧家書儀五卷 蓋書儀者古私家儀注之通名 崇文總目載唐裴蒞鄭餘慶宋杜有晉劉岳尚皆用斯目 光是書亦從舊稱也.

서는 十誦疏十卷, 戒本羯磨疏各兩卷, 僧家書儀四卷, 別集八卷이 있었지만 현전하지 않는다.¹⁸⁾ 따라서 『僧家書儀』의 내용이 어떠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僧家書儀』의 서명으로 보건대, 『隋書』 經籍志에 수록된 기존의 서의를 참고하여 佛家에서 활용할 서의를 편찬하였을 법하다. 이후 불가 전용 書儀는 잘 찾아지지 않지만, 이어지는 唐代(812년경) 鄭餘慶의 『大唐新定吉凶書儀』에는 「僧道吉書」와 「僧道凶書」 등 불가의 書儀의 자료가 일부 수록되어 있으며, 敦煌遺書 잔권 <서의>에도 불가에서 활용되는 문범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광범위한 서의의 활용이 있었고, 五代에도 전승되었을 법하다.

최근 서의의 명칭을 띤진 않았지만 동일한 구성을 가진 『五杉練若新學備用』(이하, 『五杉集』)이 소개된 바 있다.¹⁹⁾ 『五杉集』은 南唐의 應之가 保大年間(943-957)에 編纂한 것으로, 卷上 <法數, 家誨>, 『五杉練若新學備用』 卷中 <僧俗五服圖, 龕柩孝堂圖 等>, 『五杉練若新學備用』 卷下 <受五戒文 等> 으로 構成되었다. 『五杉集』 卷中 僧俗五服圖, 龕柩孝堂圖 等은 佛敎의 立場에서 儒敎的 喪葬儀禮를 受用하고 活用한 것이지만, 당시 喪葬儀禮에 있어 유교적 의례가 보다 사회적으로 폭넓게 확산되었음을 반영한다. 佛敎의 新學者가 日用的으로 갖추어 쓸 수 있도록 상장 의례를 佛敎化한 셈이다. 이후 송대 禪宗의 『禪苑清規』, 『釋氏要覽』은 喪儀에 있어 『五杉集』의 자료를 다수 인용

18) 道宣, 『續高僧傳』 권21(『大正藏』 권50, 608쪽), “釋曇瑗 未詳氏族 金陵人也 才術縱橫子史周綜 自幼及長以聽涉馳名 數論時宗 普經陶述 而威嚴群小不妄登臨 矜持有功頗以文華自處 時或規諫之者 瑗因擺撥前習 專征鄙倍 弦韋所誥驗于耳目 由是名重京邑 同例欽焉 以戒律處世 住持爲要 乃從諸講席專師十誦 功績既著學觀斯張 自爾恒當元宰 鎮講相續 有陳之世無與爲隣 使夫五衆揖其風猷七貴從其津濟 瑗其有之矣 常徒講衆二百餘人 宣帝下詔國內 …… 瑗以太建年中卒于住寺 春秋八十有二 ……著十誦疏十卷 戒本羯磨疏 各兩卷 僧家書儀四卷 別集八卷 見行於世”.

19) 朴鎔辰, 『朝鮮時代刊經都監版 『五杉練若新學備用』 編纂과 그 意義』, 『韓國學論叢』 31, 國民大韓國學研究所, 2009.

한 점으로 미루어 그 영향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日本에서도 중세 선종 淸規의 원형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한반도에서는 12세기 『高麗版禪苑淸規』 이래 조선시대 刊經都監에서 重修되었고, 그 본격적인 활용은 17세기 西山의 문도에 의해 釋門家禮抄, 釋門喪儀抄 등으로 나타났다.

현존 서의 가운데 『高麗史』 소재 서의와 가까운 시기의 司馬光 『書儀』는 裴矩와 劉岳의 『書儀』 양종을 비교 또는 인용하였고, 그 내용은 서신과 예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²⁰⁾ 司馬光의 『書儀』 卷一은 公私家 서식이고 기타는 모두 儀注 즉 제도와 예절에 관한 것이다. 『高麗史』에 수록된 서의와의 관련성은 卷五에서 卷十의 喪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의 직접적인 연관은 잘 찾아지지 않지만, 송대 사회적 규범으로서 활용된 점은 『高麗史』禮志와 동일하다. 司馬光의 『書儀』에 대해 四庫全書 書儀의 提要를 통하여 다소 후대의 이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書儀十卷 宋 司馬光 지음. 隋書 經籍志에 謝元 內外書儀 四卷, 蔡超 書儀二卷, 王宏, 王儉, 唐瑾이 모두 이러한 저술이 있다. 또 婦人書儀八卷, 僧家書儀五卷이 있다. 대체로 서의라는 것은 옛날 私家 儀注의 通名이다. 崇文總目에 수록된 唐裴蒞, 鄭餘慶, 宋 杜有晉, 劉岳도 모두 이 서의라는 명목을 사용하였다. 司馬光의 이 서의 또한 옛날의 명칭을 따른 것이다.²¹⁾

司馬光의 『書儀』에 대한 후대의 용례를 보면 바로 私家 儀注의 通

20) 『四庫全書總目』 권22, 經部22, 禮類4, “卷一：表奏公文私書家書式, 卷二：冠儀, 卷三 - 卷四：婚儀, 卷五至卷十：喪儀一至喪儀六”.

21) 『四庫全書總目』 권22, 經部22, 禮類4, “書儀十卷 宋 司馬光撰 考隋書經籍志 謝元有內外書儀四卷 蔡超有書儀二卷 以至王宏王儉唐瑾皆有此著 又有婦人書儀八卷 僧家書儀五卷 古私家儀注之通名崇文總目載唐裴蒞鄭餘慶宋杜有晉劉岳 尙皆用斯目 光是書亦從舊稱也”.

명이었고, 그 또한 唐代 이래 전래된 서의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다만 鄭餘慶, 劉岳이 편찬한 『書儀』가 황제의 명에 따라 지은 점에서 국가적 사업의 일환이었다면, 司馬光의 『書儀』는 사적 편찬이었다. 그렇지만 司馬光의 『書儀』는 후대 朱子の 『家禮』와 함께 고려나 조선에서 수용되어 儀注로서 활용되었다.

이상 서의의 유통 현황을 정리하면, 唐代에는 서의에 관한 저작이 가장 성하게 행해지고, 貞觀年間(627-649)의 裴矩의 <大唐書儀> 10권을 비롯, 裴蒞, 杜有晉, 鄭餘慶 등의 서의 저술이 있다. 돈황에서 출토된 <서의>의 잔권은 많지만, 아쉽게도 그 작자가 명확한 것은 겨우 杜有晉(P.3442), 鄭餘慶(S.6537), 張敖(P.3502 등 5건)의 몇 건이 있다.²²⁾ 이상 서의의 편찬시기는 鄭餘慶의 <<大唐新定吉凶書儀>>는 元和年間(806-820)에 편찬되었고, 張敖의 『新集諸家九族尊卑書儀』는 852년 무렵 지은 것으로 鄭餘慶의 <서의>를 취재해서 지은 것이다. 이후 劉岳은 五代 後唐 明宗代(925-933)에 鄭餘慶의 서의를 비롯한 고금의 서적을 산정하여 <吉凶書儀>를 편찬하였다. 따라서 당시 唐代 鄭餘慶의 서의 등이 전존하는 한편 다양한 서의가 있었지만, 오대에 접어들면서 의례가 단일되고 오류가 많아 재편찬한 셈이다. 송대에 이르러 司馬光은 裴矩와 劉岳의 『書儀』 양종을 비교 또는 인용하여 『書儀』를 편찬하여 현전하기에 이르렀다.

2. 일본 용례

한반도에서 서의를 수용하고 활용한 용례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일본에서는 다양한 서의의 기록이 전한다.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 한자불교문화권의 서의의 유통과 활용을 추측하여 볼 수 있다.

22) 丸山裕美子, 「書儀の受容について」, 『正倉院文書研究』, 1996, 131-132쪽.

일본에 서의가 전래된 것은 『日本國見在書目錄』(891-894년) 『十八儀注家』에 보이는데, 『大唐書儀』 10권을 비롯해서 『新修書儀』 5권, 『九族書儀』 1권, 『鮑昭書儀』 1권 등 많은 서의가 실려 있다. 이는 儀注 즉 제도와 예법적 성질의 서의와 서신의 표본이 되는 문서양식으로서의 서의로 구분된다.

圓仁의 『日本國承和五年入唐求法目錄』에는 外典으로 『鄭氏書儀』가 실려 있고, 圓珍(853-858년入唐)의 『開元寺求得經疏記等目錄』(『平安遺文』 4475-4477)에는 「福州往來集一卷乙」, 「溫州台州往來集一卷丙」, 「建老宿手書集一卷丁」 등의 왕래물이나 表·啓賀文集 등이 포함되어 平安시대(794-1185)에는 많은 서의가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³⁾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鄭氏書儀』로, 『新唐書』 『藝文志』에 『鄭氏書儀』 2권의 서명이 실려 있지만,²⁴⁾ 敦煌 사본인 『鄭氏書儀』의 1부 30권과는 그 권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圓仁의 『日本國承和五年入唐求法目錄』에 「大唐新修定公卿士庶內族吉凶書儀 一卷 鄭餘慶 重修定」이 있어 敦煌 사본 『鄭氏書儀』와 같은 것으로 종래의 서의를 수정 편찬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일본에 전래된 서의는 儀注와 서신의 문서양식 양자를 포함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중국과 일본의 전승과 수용 사례로 보아 『高麗史』에 수록된 서의는 한자문화권에서 활용된 『書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시대적 정황으로 보아 唐代 鄭餘慶의 『鄭氏書儀』 즉 『元和新定書儀』, 五代 시기 劉岳의 『書儀』 등 어느 것을 지칭하겠지만 전존 자료의 부재로 고려시대 『書儀』와의 상관성은 분명치 않다.

23) 丸山裕美子, 「書儀の受容について」, 『正倉院文書研究』, 1996, 132-133쪽.

24) 『新唐書』 권58, 藝文志48.

Ⅱ. 『高麗史』禮志『書儀』기사의 내용

중국과 일본에 있어 서의의 유통은 동시적이었지만, 한반도에 있어 『書儀』에 대한 자료는 잘 찾아지지 않고, 『高麗史』에 2건의 기사가 실려 있다. 『書儀』가 단일 서명으로 『高麗史』禮志 凶禮條에 수록된 원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景宗六年十二月制 父母忌日**依書儀**一日兩宵給暇(『高麗史』 권64, 志18, 禮6凶禮, 百官忌暇).

② 文宗 三十七年十二月制 宮城內各衙門官吏黻服出入不合儀制凶服者不入公門之義宮城外官准資換任其不得已任宮城官者**依書儀**入朝但吉服之文入宮城吉服歸家依制行服(『高麗史』 권64, 志18, 禮6, 凶禮, 五服制度).

위에서 2회 인용된 『書儀』는 『高麗史』禮志 흥례조의 <五服制度>, <百官忌暇>의 항목에서 확인된다. 이 『書儀』는 앞선 신라대나 고려 이후 활용된 사례는 사서에서 잘 찾아지지 않는다. 위 『書儀』의 내용은 경종 6년(981)의 조칙으로 부모의 기일에는 『書儀』에 의거하여 2일의 휴가를 준 것이다. 또 약 100년 뒤인 문종 37년(1083)의 조칙에 따르면, 궁성 안의 각 관서에 근무하는 관리들이 참복을 입고 궁성문을 출입하는 것은 ‘흉복자는 공문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의제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경우 궁성외관 동급관리와 교체하고, 부득이 궁성내의 관리로 임명할 경우 『書儀』의 ‘입조는 단지 길복으로 한다’라는 문구에 의거 궁성에 들어가면 길복을 착용하고, 귀가 시에는 제도에 따라 상복을 입도록 하였다.

父母忌日の 給暇는 오복제에 따라 喪期가 끝난 후의 忌日祭에 휴가를 주는 것이다. 이는 五服制度 등을 규정하는 正禮의 불비를 보충

할 수 있는 『書儀』를 활용하여 부모의 기일에도 휴가를 준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百官忌暇>조에서도 찾아지는데, 이는 상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五服制度의 喪期를 보충하는 내용이다.

다음은 <入朝吉服>의 규정인데, 흉복 즉 상복을 입고 궁중에 출입할 수 없고 부득이 관리로 임명되어 입궁할 때에는 ‘입조시에는 길복으로 한다’라는 『書儀』를 원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규정된 서의는 잘 찾아지지 않고 다만 司馬光의 『書儀』喪儀五小祥에 ‘朝服純吉服也’가 제시되었지만 동일한 내용은 아니다. 결국 『高麗史』의 『書儀』는 흉례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한 셈이다.

한편 『高麗史』禮志 흉례조에는 『書儀』 이외에 일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흉례의 규정이 준수되었음을 알려주는 추가 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高麗史』 소재 흉례 관련 제규정

시기	내용	규정	전거
顯宗 9년5월제	文武官遭喪第十三月初忌日小祥齋給暇三日其月晦日小祥祭給暇三日第二十五月二忌日大祥齋給暇七日其月晦日大祥祭給暇七日自翼日計六十日至二十七月晦日禫祭給暇五日二十八日一日以吉服正角出官行公. 十九年四月制: 京外官吏父母喪大祥齋後禫前依前出仕.	依制	高麗史64卷-志18-禮6-凶禮-五服制度-003
顯宗 11년윤6월제	無親子祖父母忌日除庶人外文武入仕人並給暇一日兩宵		高麗史64卷-志18-禮6-凶禮-百官忌暇-003
文宗 30년6월제	先亡有後之妻及同居妻父母忌日依制給暇	依制	高麗史64卷-志18-禮6-凶禮-百官忌暇-004

시기	내용	규정	진거
明宗 14년7월제	文武入流以上者妻父母忌日依外祖父母式一日兩宵給暇	依外祖父母式	高麗史64卷-志18-禮6-凶禮-百官忌暇-005
成宗원년判	兩親忌給暇一日兩宵祖父母遠忌無親子者亦依此例. 四年 新定五服給暇式 : 斬衰齊衰三年給百日; 齊衰期年給三十日; 大功九月給二十日; 小功五月給十五日; 總麻三月給七日. 十五年判: 凡官吏父母喪三年每月朔望祭暇一日十三月初忌日小祥齋暇三日其月晦小祥祭暇三日第二五月第二忌大祥齋暇三日其月晦大祥祭暇七日至二十七月晦禫祭暇五日.	五服給暇式	高麗史84卷-志38-刑法1-公式-官吏給暇-002
仁宗18년判	無親子祖父母忌依 宋制 給暇一日兩宵. 判: 入流品以上者妻父母服給暇三十日其忌日依外祖父母例給暇一日兩宵.	依宋制 依外祖父母例	高麗史84卷-志38-刑法1-公式-官吏給暇-008

위 <표 1>에 제시된 『高麗史』 소재 흥례 관련 제규정은 忌日에 백관에게 휴가를 주는 것으로, 그 집행근거는 “依制, 五服給暇式, 依外祖父母式 依宋制, 依外祖父母例”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高麗史』 형법지 官吏給暇조의 성종과 인종대 기사에서도 찾아진다. 이 형법지 官吏給暇조 17건 가운데 2건이 관료들의 휴가 가운데 상장의례와 관련이 있고, 흥례조 또는 서의와의 상관성이 있겠지만 구체적인 관련성을 지적하기 어렵다.

성종 원년(981)에는 관리가 상을 당한 경우 휴가를 주는 五服給暇式을 새로이 제정한 것으로 보아 고려 건국 이래 정해진 법식이 없었음을 시사한다. 인종 18년(1140) 기사를 보면, 친자가 없는 조부모의

기일에는 <宋制>에 의해 이틀 밤의 휴가가 주어졌다. 성종 원년판에 유사한 규정이 있음에도 <宋制>를 제시한 것은 고려의 상장의례 관련 규정이 여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알려주며, 더 나아가 인종 연간 송과의 교류 가운데 관련 제도를 참고하였겠지만 구체적 교류 내용은 잘 찾아지지 않는다

결국 『高麗史』 흉례 및 상장의례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예전이 정립되어있지 않았고, 형법지에 있어도 성종대의 <新定式>이 있었지만, 인종대에는 다시 <宋制>에 따르고 있어, 정비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율은 신라율을 계수하는 한편 당율을 보완하였고, 성종 연간에 <新定五服給暇式> 등을 제정하였고, 문종 연간에는 최충 등에 의해 전통 고려율에 당율과 송율, 송척 및 역대 선왕들의 制, 判, 敎 중에서 취사하여 고려율을 재편하였다.²⁵⁾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高麗史』 소재 『書儀』는 부모 기일의 휴가, 입조시 길복 착용을 규정한 것이었다. 부모 기일 급가 규정은 『高麗史』 『禮志』 흉례 백관급가조와 『刑法志』 公式 官吏給暇조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書儀』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依制, 五服給暇式, 依外祖父母式 依宋制, 依外祖父母例” 등으로 표현되었다. 결국 『書儀』는 상장의례시 활용할 내용을 포함하여 凶禮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셈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서의가 신라 전래의 서적이나 『高麗史』 이외의 자료에서 구체적 서명으로 활용된 사례는 잘 찾아지지 않고, 『高麗史』에 2회 전해질 뿐이다. 고려의 유교 정치이념에는 周禮가 활용되어 국왕의 권위를 제고하고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이념적 기

25) 한용근, 『高麗律』, 書景文化社, 1999, 100-101쪽에서 “고려시대에는 독자적인 고려율 제정이 없었고, 신라 이래의 전통적인 우리 고유법을 모태로 한 신라율을 계수하여 고려율로 사용하였다.”라고 하였다.

반으로 기능하였다. 그 가운데 흥례는 유가의 상제의 원리에 기초한 왕권의 정상적인 계승과 안정을 도모하는 기반이었다.²⁶⁾ 그렇지만 『高麗史』에서 흥례로 분류된 서의 내용은 儀禮 3書の 내용과 구체적으로 대응되지 않고, 잔존하는 서의에서도 유사한 내용은 잘 찾아지지 않는다. 결국 『書儀』는 정규 의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상례를 실천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보충적 성격을 띠며 상장의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고려시대 『書儀』 활용의 의례사적 의의

서의는 국내에서 연구된 바 없지만, 四庫全書나 일본과 중국의 연구에 기초하면 그 정의는, 서신의 범분과 예의의 양방면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書札體式, 儀注를 의미한다. 『高麗史』 소재 서의 기사の内容은 의주로 분류되는데, 특히 흥례나 상장의례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 의례사적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고려사상 서의의 수용은 명확치 않지만 경종대 서의 기사로 보아 司馬光 『書儀』 이전 단계인 당이나 오대의 서의류가 수용되었을 법하다. 고려 인종대 『古今詳定禮』 단계에 수용되거나 참고 되었을 법한 宋代 司馬光의 『書儀』는 表奏公文私書家書式一卷, 冠儀一卷, 婚儀二卷, 喪禮六卷으로 구성되었고, 후대 고려와 조선에서 수용된 주자의 『家禮』도 이것을 조금 增損하였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朱子도 중시한 것으로 고려후기 이래 주자성리학의 실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우선 한반도에 있어 서의의 기록은 분명치 않지만, 서신

26) 도현철, 『麗末鮮初 改革思想의 展開와 周禮』, 『한국중세의 정치사상과 周禮』, 혜안, 2005, 86-87쪽.

의 문서양식과 儀注를 포괄하는 다음 기록이 참고된다.

사신을 당에 파견하여禮記와 文章을 청하였다. 周武后則天이 담당 관서에 명하여 吉凶要禮를 베끼고, 文館詞林에서 그 문사가 규계로 삼을 만한 것을 가려 뽑아 겨우 오십권을 만들어 하사하였다.²⁷⁾

위의 자료는 신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唐禮 1부와 雜文章을 청하여 吉凶要禮와 『文館詞林』에서 規誡와 관련된 50권을 받은 기록이다. 『舊唐書』의 기록을 전제한 『三國史記』에 따르면, 신문왕이 사신을 파견하여 禮記와 文章을 요청함에, 측천무후가 吉凶要禮와 『文館詞林』에서 規誡가 될 내용을 가려 뽑아 50권을 만들어 주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의 唐禮는 『三國史記』에는 『禮記』라 하였지만, 신문왕 2년(682)에 국학에서는 『周易』, 『尙書』, 『毛詩』, 『禮記』, 『春秋左氏傳』, 『文選』으로 나누어 學業토록 한 점으로 미루어 『禮記』는 이미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⁸⁾ 한편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 『舊唐書』에는 唐禮라 하였기 때문에, 『開元禮』 또는 당시 유행하는 唐의 의례와 관련된 禮書로 이해된다. 결국 신라는 唐禮에 대응한 것으로 吉凶要禮를, 잡문장에 대응해서는 『文館詞林』에서 정리한 것을 받은 셈이다. 신라에 오례가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진덕왕대를 전후한 시기였고, 신문왕 6년에 吉凶要禮의 수용으로 체계화되었다. 吉凶要禮의 수용을 전후하여 길례 등 오례는 신라사회에서 운용되었고 관련 부서도 정비되었다. 신라에

27)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신문왕 6년. 『三國史記』는 중국측 사서를 전제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舊唐書』 권199상, 열전149, “東夷垂拱二年 政明遣使來朝 因上表請唐禮一部并雜文章 則天令所司寫吉凶要禮并於文館詞林 採其詞涉規誡者 勒成五十卷以賜之”.

28) 『三國史記』 권38, 잡지7 직관, 국학, “教授之法, 以周易 尙書 毛詩 禮記 春秋左氏傳 文選 分而爲之業 博士若助教一人 或以 禮記 周易 論語 孝經 或以 春秋左氏傳 毛詩 論語 孝經 或以 尙書 論語 孝經 文選 教授之”.

들어온 오례는 왕권의례로 신라 중대 왕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²⁹⁾ 이상의 고려 이전 신라대 사료의 唐禮와 『文館詞林』의 기록 이외에는 『禮記』의 전존이 기록되었지만, 서의와 관련한 자료는 잘 찾아지지 않는다.

다음은 고려시대에 서의의 서명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서신의 범본과 儀注와 관련되었을 중국과의 서적 교류의 사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자의 등이 송으로부터 돌아와 아뢰기를, “황제가 우리나라의 서적에 좋은 판본이 많음을 듣고 관반사에게 명하여 구하는 목록을 써서 주면서 이에 말하기를, ‘비록 권차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또한 모름지기 전사(傳寫)하여 부쳐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文選》…… 《類文》三百七十卷, 《文館詞林》一千卷……蔡邕 《月令章句》十二卷……”(『高麗史』 권10, 세가10, 선종 8년 12월 丙午).

위의 사료에 나오는 《類文》, 《文館詞林》, 蔡邕의 《月令章句》등을 통하여 겨우 고려시대 서의의 수용을 유추하여 볼 수 있다. 다만 이 서명은 서신의 모범문례로서 기능하였고, 흥례로서의 儀注의 내용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전후 시기의 고려에서는 『書儀』의 기록이 잘 찾아지지 않고 교류에 대한 모습도 잘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高麗史』禮志 凶禮條에 『書儀』가 인용되었다. 앞 장에서 제시하였지만 당시 고려의 특수성과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 통용된 서의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서의는 儀注를 핵심내용으로 함에 따라 유교 五禮에도 활용되었고, 특히 凶禮에서 그 활용도는 컸다. 이러한 서의가 처음 등장하는 고려 경종대는 광종대 이래 과거를 비롯한 유교적 정

29) 채미하, 『신라 중대 오례와 왕권 - 오례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7. 한국사상사학회, 2006.

치제도가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고, 고려의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통치이념으로 유교적 정치사상을 정립하였다.³⁰⁾ 이에 짝하여 유교 의례 또한 다양하게 활용되었을 법한데, 『儀禮』나 상장의례를 언급한 『高麗史』의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과인은 매번 禮經을 보다가 ‘남자는 부인에게 시종을 받으면서 죽어서는 안 된다’에 이르러 일찍이 읽으면서 탄식하지 않음이 없었다. 오늘에 이르러 이제 좌우의 시침과 궁녀를 모두 물리쳤다.……내가 죽은 후에 상복을 입는 기간과 경중은 한나라 제도에 의거하되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하여 13일 만에 소상, 26일 만에 대상을 지내고 왕릉제도는 될 수 있는 대로 검약하게 하라.³¹⁾

위 사료에 따르면 경중은 임종에 이르러 유조를 통하여 漢制에 의해 상례를 집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禮經>의 기록으로 제시된 ‘남자는 부인에게 시종을 받으면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실제 『儀禮』 既夕第13, 記의 ‘男子不絶于婦人之手’에 해당한다. 이로 보아 경종대에 이미 『儀禮』에 대한 이해와 漢制에 따른 상례에 의해 유교적 실천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성종대는 송나라와 교류하는 가운데 유교의례의 실천적 전개가 주목된다. 특히 성종 2년(983)에 송나라로부터 太廟堂圖一鋪竝記一卷, 社稷堂圖一鋪竝記一卷, 文宣王廟圖一鋪, 祭器圖一卷, 七十二賢贊記一卷을 구하였고,³²⁾ 유교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의례와 관련한

30) 김두진, 『고려시대사상사산책』, 국민대학교출판부, 2009, 204쪽.

31) 『高麗史』 권2, 세가2, 경종 6년 秋七月, “寡人每覽禮經 至男子不死婦人之手 未嘗不臨文嘆仰 至于今日 左右嬪御 已令屏去……服紀輕重 合依漢制 以日易月 十三日周祥 二十七日大祥 園陵制度 務從儉約”.

32) 『高麗史』 권3, 세가3 성종2년 8월 甲子, “甲子博士任老成至自宋獻 大廟堂圖一鋪并記一卷社稷堂圖一鋪并記一卷文宣王廟圖一鋪祭器圖一卷七十二賢贊記一卷”.

9경을 요청한 일도 있었다.³³⁾ 성종이 구한 9경은 유교의 9부의 경전으로 시대에 따라 그 명목이 일치하지 않지만, 『易』, 『書』, 『詩』, 『周禮』, 『儀禮』, 『禮記』, 『春秋』, 『孝經』, 『論語』이다. 이 가운데 의례와 관련하여 『周禮』, 『儀禮』, 『禮記』가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禮書의 전통은 신라대에서 구할 수 있는데, 신문왕 2년(682) 국학에서 『禮記』를 중심으로 교육하였고, 고려대에는 3부 예서로 확대되었다. 이를 전후하여 예서나 서의의 교류 내용은 잘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현종 19년(1028)에 송나라 상인李文通이 와서 597권의 책을 바쳤고, 다시 국교가 재개되는 문종 28년(1074)에 송 황제는 9經, 子, 史 등 제서를 고려 사신들에게 팔 수 있도록 허락한 기록이 있어 의례서가 포함되었겠지만 이 또한 분명치 않아 추측에 그친다.³⁴⁾

한편 신라의 기록에도 서의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지만, 비슷한 시기 일본의 圓仁錄 『日本國承和五年入唐求法目錄』에 『大唐新修定公卿士庶內族吉凶書儀一卷(鄭餘慶重修定)』이 있어 참고 된다. 이 목록은 838년경 작성된 것으로, 圓仁의 입당구법은 신라인의 도움으로 가능하였고, 장기간 적산 법화원에 체류하면서 在唐 新羅人과의 교류도 있어 『書儀』의 존재는 신라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법하다.

『高麗史』에 수록된 문종대(1046-1083) 서의 기사와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송나라 司馬光의 『書儀』는 1081년경 찬술된 것으로, 당시까지 전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裴矩(度)書儀와 劉岳書儀를 비교 참조하여 찬술된 것이다. 따라서 『高麗史』 소재 서의는 唐代 저작인 裴矩, 裴蒞, 鄭餘慶, 杜有晉, 鄭珣瑜의 서의와 五代 劉岳의 『吉凶書儀』

33) 『宋史』 권487, 高麗傳, “高麗國王 又上言願賜 板本九經 書用教儒”.

34) 『高麗史』 권4, 세가4 현종1년 9월 癸卯, “宋江南人王肅子等二十四人來獻方物”; 『續資治通鑑長編』 권394, 神宗 熙寧七年, “宋神宗詔令國子監, 許賣九經, 子史諸書與高麗使者”.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고려 경종 6년(981)과 문종 3년(1049)의 서의는 송조 司馬光의 『書儀』를 제외한 唐이나 五代 年間에 편찬된 전래본으로 추측되나 분명치 않다.

앞서 지적하였지만 五代 南唐의 應之가 편찬한 『五杉集』이 불교에서 활용된 서의로서 고려전기에 수용되어 조인되었고, 조선초 간경도감에서 중수한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³⁵⁾ 이 『五杉集』 卷中 僧俗五服圖, 龕柩孝堂圖 등은 佛敎의 입장에서 儒敎的 喪葬儀禮를 受用하고 활용한 것이다. 서의는 禮가 중시되는 사회에 있어 문장 규범과 儀注로서 활용되었으며, 『五杉集』에 수록된 서의의 원형은 돈황에서 발견된 寫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듯 『五杉集』의 존재도 고려시대 서의가 다방면에서 수용되어 활용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高麗史』에 실린 서의는 인종대 최윤의의 『古今詳定禮』가 편찬되기까지 신라대 이래 의례 전개의 계기적 이해를 더할 수 있다. 『高麗史』 예지의 서문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고려 태조가 나라를 창건하던 초기의 규모는 자못 원대하였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예법을 의논할 겨를이 없었다. 성종에 이르러 선대의 유업을 받들어 원구에 제사하고, 적전을 경작하고 종묘와 사직을 세웠다. 예종의 의례를 정하는 기관을 세웠으나 실은 책이 전함이 없다. 의종때 평장사 최윤의가 상정고금례 50권을 편찬하였으나 빠진 것이 많았고 나머지 문적도 다시 전란을 거치면서 열에 한 둘이 남았다. 이제 사편과 상정례에 의거하고, 주관육익, 식목편론, 변국예의 등 책을 두루 가려서 吉凶軍賓嘉의 五禮를 분찬하여 예지를 만든다.³⁶⁾

35) 朴鎔辰, 『朝鮮時代刊經都監版 『五杉練若新學備用』 編纂과 그 意義』, 『韓國學論叢』 31, 國民大韓國學研究所, 2009.

36) 『高麗史』 권59, 志13 禮1, “……高麗太祖立國經始 規模宏遠 然因草創未遑議禮. 至于成宗恢弘先業 祀圓丘耕籍田建宗廟立社稷 睿宗始立局定禮儀 然載籍無傳. 至毅宗時平章事崔允儀撰詳定古今禮五十卷 然闕遺尚多 自餘文籍 再經兵火十存一二. 今據史編及詳定禮 旁采周官六翼式目編綴蕃國禮儀等書 分纂吉凶軍賓嘉五禮

『高麗史』 편찬자는 고려 초기에는 의례의 편찬이 없었고 의종대 평장사 최윤의에 의해 『古今詳定禮』가 편찬되고서야 본격적인 의례가 정비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고려대 유교윤리의 실천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었지만, 의례서를 기준으로 상세한 부분을 규정하는 실천단계에까지 이르렀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의종대에 『古今詳定禮』를 편찬하면서 기존의 서의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참고했을 법하다. 이규보의 <新序詳定禮文>의 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조 국초 이래 그 예제의 증감이 대대로 한결같지 않아 문제가 된지 오래였다. 인종조에 비로소 평장사 최윤의 등 17명의 신하에게 조칙을 내려 고금의 같고 다른 것을 모아 상작 절중하여 50권의 책을 이루어 이름하여 상정예문이라 하여 세상에 유행하였다. 그런 후에 예의가 돌아갈 바가 있게 되었고, 사람들이 의혹되지 않았다(『東國李相國集 後集』 권11, 『韓國文集叢刊』 권2, 242쪽).

의종조에 최윤의 등이 『古今詳定禮』를 편찬하였고, 국초 이래 고금의 같고 다른 여러 가지 의례를 모아 비교하여 현실에 맞게 정리한 것이다. 예종, 인종 때 준비 단계를 거쳐 의종 때 『古今詳定禮』로 정리되었고, 조선 초기까지 전승되어 『高麗史』 편찬시에 예지의 편찬 근거가 된 셈이다. 고려왕조가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유교문화의 예제를 통하여 새로운 질서의 기준을 모색하였고, 성종 때부터 적극적으로 유교적 실천윤리를 전개하였다. 성종대 유교정치의 구현은 학교를 포함한 옛 제도를 상고하여 정비하려는 속에 도덕적인 덕목을 강조하였고, 이는 이후 실천적 윤리를 내세우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³⁷⁾ 『古今詳定禮』의 정립은 고려초기 이래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와 고려 왕

作禮志”.

37) 김두진, 『고려시대사상사산책』, 국민대학교출판부, 2009, 212-217쪽.

실과 문무반 관료와의 정치권력구조 상황이 만들어 낸 고려 왕조의 정치질서의 체계였다.³⁸⁾ 고려왕조에서는 성종(981-997) 때부터 적극성을 보이면서 유교문화의 예의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새 정치질서의 편제를 만들어 갔고, 어느 정도 유교문화의 오례의 체계를 수용하여 정리한 것이 고려 예종(1105-1122) 때였으며, 崔允儀의 『古今詳定禮』로 정립된 것이다.

한편 『高麗史』의 서의에 대한 자료는 景宗(975-981)과 文宗(1046-1083)대 기사이므로, 성종 이전부터 신라 이래 전통적 의례와 당이나 오대의 예제, 그리고 서의를 통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을 법하다. 이와 관련하여 『高麗史』의 ‘制禮’는 태조가 국가를 세워 경영함에 초장기에는 의례를 의논할 여유가 없었고, 성종대에 이르러 선조의 유업을 발양하여 圓丘, 籍田, 宗廟, 社稷의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어 睿宗 때 처음으로 禮儀를 정하는 기구를 두었고, 의종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平章事 崔允儀가 『古今詳定禮』 五十卷을 편찬한 것을 특기하였다.³⁹⁾ 이러한 국가의례의 정비 과정에 있어 서의는 실천적 의례로 기능하였을 법하다.

서의가 활용되었던 경종대는 宋朝와의 교류도 활발하였는데, 親試의 실시를 통하여 과거제를 진전시키는 한편, 대송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976년에 金行成을 송나라 국자감에 입학시키고, 977년에는 왕자를 송나라에 보내는 등 재위 6년간 왕복 사행을 포함하여 宋朝 관

38) 李範稷, 『韓國中世禮思想研究』, 一朝閣, 1991. 48-49쪽. 『古今詳定禮』에 대한 연구성과는 이외 金澈雄, 『『詳定古今禮』의 편찬시기와 내용』, 『東洋學』 33, 2003 등을 참조.

39) 『고려사』 권59, 지13 예1, “高麗太祖立國經始規模宏遠 然因草創未遑議禮 至于成宗 恢弘先業 祀圓丘 耕籍田 建宗廟 立社稷 睿宗始立局定禮儀 然載籍無傳 至毅宗時 平章事崔允儀撰詳定古今禮五十卷 然闕遺尙多自餘文籍 再經兵火十存一二 今據史編及詳定禮 旁采周官六翼式目編綠蕃國禮儀等書分纂吉凶軍賓嘉五禮作禮志”.

런 기사는 5건에 이른다.⁴⁰⁾ 이 보다 앞선 시기에 활동한 인물 가운데 광종대 後周人 雙翼, 後周에 사신을 다녀온 王融은 유학적 소양을 가지고 유교체제 정비에 조력하였다.⁴¹⁾ 이로 보아 서의의 활용 역시 신라 이래 전래본임을 배제할 수 없지만, 後周 등 五代 국가와의 활발한 교류시 수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시기 경종대 의례 관련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고려인은 국휼의 의례를 세우지 않았고 나라에 큰 변고가 있으면 모두 임시로 채취하여 꾸러 맞추어서 종사하고 일이 끝나면 숨기고 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사서에 보이는 것은 특히 대강뿐이다(『高麗史』 권 64, 志18 禮6 凶禮 國恤2).

② 경종 6년 7월 왕의 병이 오래 낫지 않아 갑진에 조칙을 내려 복기는 날로써 달을 대신하게 하되 13일에 周祥하고 27일을 大祥으로 하며 서경, 안동, 안남, 등주 등의 여러 도 진수는 각기 임소에서 거애하되 3일만에 服을 벗도록 하였다. 병오에 정침에서 흥하니 영릉에 매장하고 성종이 즉위하였다.⁴²⁾

위 사료 ①의 國恤 즉 국왕의 상례에 즈음하여 정해진 의례가 없었고 임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②의 경종 연간 흥례의 내용은 ‘以日易月制’, 祥制, 舉哀釋服, 薨于正寢葬于榮陵으로 나타나 간략하지만 기본적으로는 『儀禮』를 따르고 있다. 『高麗史』 禮志 凶禮조는

40) 『고려사』 권2, 세가2, 경종1년 7월.

41)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과목에 따르면 광종대에서 성종대까지 11회 知貢擧를 역임하였다. 후주 사신 기록은 『고려사』 권2, 세가2, 광종6년, “遣大相王融如周獻方物”. 한편, 왕융을 남중국 吳越 출신으로 추정한 견해도 있다(구산우, 『高麗 成宗代 정치세력의 성격과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14, 한국중세사학회, 2003, 112쪽).

42) 『高麗史』 권64, 志18 禮6 凶禮 國恤3, “景宗六年七月王疾彌留甲辰遣詔服紀以日易月十三日周祥二十七日大祥西京安東安南登州等諸道鎮守各於任所舉哀三日釋服. 丙午薨于正寢葬于榮陵成宗即位”.

國恤, 陳慰儀, 祔太廟儀, 上國使祭集贈賻弔慰儀, 先王諱辰眞殿酌獻儀, 上國喪, 隣國喪, 諸臣喪, 五服制度, 百官忌暇, 重刑奏對儀 등 11개조로 구성되었다. 이를 『周禮』나 『唐書』와 비교하면 이들 의례는 당의 『開元禮』에 보이는 주례적 요소 가운데 상례에 해당하는 것만을 확대 수용한 셈이다.⁴³⁾ 그러나 『高麗史』의 百官忌暇, 重刑奏對儀는 당례와 차별적 부분으로 서의나 宋制를 준용한 것이었다. 고려는 유교적 정치이념을 도입함에 따라 중국의 유교 경전에 근거한 예제와 고려사회에 전승된 요소를 토대로 오래제를 정비하였다. 유교 경전에서는 3례서 가운데 『周禮』를 기본으로 『禮記』가 원용된 것으로 추정하였다.⁴⁴⁾ 그러나 경종의 임종시 『儀禮』 내용을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儀禮』도 활용되었을 법하다.⁴⁵⁾ 이를 포함하여 중국에서 수용한 『周禮』나 『禮記』의 현실 규정력 미흡과 신라 이래 전통의 계승적 측면을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이 상존하였을 법하다. 이에 대한 실천적 전개가 『書儀』나 宋制의 적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서의는 『周禮』나 『儀禮』의 현실 규정력을 보충하고 신라 이래 전통의 계승을 토대로 고려전기 현실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는 고려중기 의종대에 『古今詳定禮』로 정립된 것으로 이해된다.

43) 周禮 : ① 喪禮(哀死亡)② 荒禮(哀凶禮)③ 弔禮(哀禍裁)④ 禴禮(哀圍敗)⑤ 恤禮(哀寇亂), 唐書 : ① 天子賑恤水旱 遣使問疾 弔死 舉哀 除服 臨喪 冊贈之類 諸臣之喪葬 衰麻 哭泣② 五服之制③ 諸臣之喪

44) 李熙德, 「유학사상의 실천적 전개」, 『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1994, 272-273쪽.

45) 『고려사』 권2, 세가2, 경종6년 추7월, “每覽禮經 至男子不死婦人之手未嘗不臨文嘆仰 至于今日左右嬪御已令屏去. 倘或不延歎至大期更何所恨. 服紀輕重合依漢制以日易月十三日周祥二十七日大祥園陵制度務從儉約. 其西京安東安南登州等諸道膺鎮守之任有軍旅之權者所寄非輕豈宜暫曠. 不許離任赴闕各於任所舉哀三日釋服. 其餘並委嗣君處分”.

맺음말

『高麗史』 예지에 수록된 『書儀』 기사에 대한 내용과 의의를 살펴 보았다. 서의는 서간의 작성 방법, 용어 등의 참고서라 할 수 있는데, 오랜 기간 활용되면서 그것은 단순한 서신의 文範을 넘어 儀注와 동의어로 취급되는 등 書信 範本에서 儀注로 확대되었다. 즉 광의의 書儀는 儀注類로서吉凶의 儀式에 즈음하여 세세한 사항까지도 규정하는 禮 일반의 作法書로 기능이 확대되었다.

書儀의 저술은, 남조의 유송시대 이후부터 비롯되고, 『隋書』 經籍志 史部 儀注類에 다양한 書儀가 수록되어 있다. 『四庫全書』 단계에서 사용된 서의라는 용어는 옛날 私家の 儀注의 通名으로, 崇文總目에는 唐의 裴蒞, 鄭餘慶, 宋의 杜有晉, 劉岳 등이 모두 <서의>라는 명목을 사용하였고, 송대 사마광의 『書儀』 또한 옛날의 명칭을 따라서 사용하였다. 한편 이 가운데 佛家에서 사용한 서의로서 『僧家書儀』 5권이 주목되며, 이를 반영한 것이 應之의 『五杉集』으로 판단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 『五杉集』이 고려시대 판이라는데 있다. 이 책이 중국 오대시기에 편찬되었지만 고려전기에 도입되어 서의로 활용되었을 법하다.

또한 『高麗史』 禮志에 수록된 서의를 단서로 서의 연구의 단초와 통사적 정리를 시도하였다. 국내에서는 서의가 연구된 바 없는데, 이는 자료의 일실과 관련되었을 법하다. 서의는 서신과 예의의 양방면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書札體式, 典禮儀注를 의미한다. 典禮儀注의 의미에서 유교의 五禮를 포괄한다.

서의의 유통 현황을 정리하면, 당대에는 서의에 관한 저작으로 貞

觀年間(627-649)의 裴矩의 『大唐書儀』 10권을 비롯, 裴蒞, 杜有晉, 鄭餘慶 등의 서의 저술이 있었다. 돈황에서 출토된 <서의>의 잔권은 많지만, 아쉽게도 그 작자가 명확한 것은 겨우 杜有晉, 鄭餘慶, 張敖 등의 몇 건이다. 이상의 서의의 편찬시기는 鄭餘慶의 『大唐新定吉凶書儀』는 元和年間(806-820)에 편찬되었고, 張敖의 『新集諸家九族尊卑書儀』는 852년 무렵 지은 것이다. 五代 後唐 明宗代(925-933)에 劉岳은 왕명을 받아 鄭餘慶의 서의를 비롯한 고급의 서적을 산정하여 <吉凶書儀>를 편찬하였다. 송대에 司馬光은 裴矩와 劉岳의 『書儀』를 비교 또는 인용하여 『書儀』를 편찬하여 현전한다. 일본의 경우 圓仁의 『日本國承和五年入唐求法目錄』에는 外典으로 『鄭氏書儀』가 실려 있어 서의가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의가 『高麗史』 이외의 자료에서 구체적 서명으로 활용된 사례는 잘 찾아지지 않는다. 『高麗史』 소재 『書儀』는 부모 기일의 휴가, 입조시 길복 착용을 규정한 것이었다. 부모 기일 금가 규정은 예지 흥례조 백관금가조, 형법지 公式 官吏給暇條에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이는 『書儀』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依制, 五服給暇式, 依外祖父母式 依宋制, 依外祖父母例” 등으로 표현되었다.

서의의 자료는 景宗(975-981)과 文宗(1046-1083)대 기사이므로, 성종 이전부터 신라 이래 전통적 예의와 당이나 오대의 예제인 서의를 통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을 법하다. 『高麗史』의 ‘制禮’는 태조가 국가를 세워 경영함에 초창기에는 의례를 의논할 여유가 없었고, 성종대에 이르러 선조의 유업을 발양하여 圓丘, 籍田, 宗廟, 社稷의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어 睿宗 때 처음으로 禮儀를 정하는 기구를 두었고, 의종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平章事 崔允儀가 詳定古今禮를 편찬하였다. 이러한 국가의례의 정비 과정에 있어 서의는 실천

적 의례로 기능하였을 법하다. 서의가 활용되었던 경종대는 宋朝와의 교류도 활발하여, 서의의 활용 역시 신라 이래 전래분임을 배제할 수 없지만, 오대 이후 송조와의 활발한 교류시 수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서의의 고려 의례사적 의의는 중국에서 수용한 『周禮』, 『儀禮』, 『禮記』의 현실 규정력 미흡과 신라 이래 전통의 계승적 측면을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실천적 전개가 『書儀』나 宋制의 적용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서의는 『周禮』나 『儀禮』 및 『禮記』의 현실 규정력을 보충하고, 신라 이래 전통의 계승을 토대로 고려전기 현실 적합성을 확보한 것이 의종대 『古今詳定禮』로 정립된 것으로, 고려전기 의례 정립사를 계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주제어 : 『書儀』, 『高麗史』 <禮志>, 凶禮, 崔允儀, 詳定古今禮, 杜有晉, 鄭餘慶, <大唐新定吉凶書儀>, <周禮>, <禮記>, <儀禮>, 書札體式, 儀注

(논문투고: 2011.5.7/ 논문심사완료: 2011.6.14/ 논문게재 확정일: 2011.6.20)

참고문헌

史料

『高麗史』, 『儀禮』, 『禮記』, 司馬光『書儀』, 魏徵『隋書』, 歐陽修『新唐書』, 歐陽修『新五代史』, 王堯臣『崇文總目』, 脫脫『宋史』, 紀昀『四庫全書總目』 등

論文 및 著書

김동욱, 「古文書의 樣式的 研究 序說(1)」 『人文科學』, 연세대인문과학연구소, 1967.

김두진, 『고려시대사상사산책』, 국민대학교출판부, 2009.

도현철, 「韓末鮮初 改革思想의 展開와 周禮」 『한국중세의 정치사상과 周禮』, 혜안, 2005.

朴鎔辰, 「朝鮮時代刊經都監版『五杉練若新學備用』編纂과 그 意義」 『韓國學論叢』 31, 國民大韓國學研究所, 2009.

沈喁俊, 「韓國古文書의 套式」 『內賜本版式·古文書套式研究』, 一志社, 1990.

李範稷, 『韓國中世禮思想研究』, 一朝閣, 1991.

李熙德, 「유학사상의 실천적 전개」 『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1994.

채미하, 「신라 중대 오례와 왕권 - 오례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7. 한국사상사학회, 2006.

최승희, 『韓國古文書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한용근, 『高麗律』, 書景文化社, 1999.

허흥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那波利貞, 『『元和新定書儀』と杜友晋の編する『吉凶書儀』とについて』, 『史林』 45/1, 1962.

內藤湖南, 『正倉院尊藏旧抄本に就きて』 『內藤湖南全集』 제7권, 筑摩書房, 1970

山田英雄, 『書儀について』, 『日本古代史攷』, 岩波書店, 1987(초판 1968).

吳麗娛, 『唐禮摭遺-中古書儀研究』, 商務印書館, 2002.

周一良·趙和平, 『唐五代書儀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丸山裕美子, 『書儀の受容について』, 『正倉院文書研究』, 1996, 132-133쪽.

『Goryeosa』 <yeji> 『Shuyi』 the article's content and significance

Park, Yong-jin

『Shuyi書儀』 is recorded in 『Goryeosa高麗史』 yeji禮志, but it has not been studied in this country because of the scarcity of historical sources. 『Shuyi書儀』 comments on letter writing and courtesy by means of a letter model texts and a ritual ceremony. 『Shuyi書儀』 includes five ceremonies五禮 of Confucianism takes its meaning from courtesy.

As recorded in 『Goryeosa高麗史』 『Shuyi書儀』 prescribes that the “death days of parents holidays” and the “types of clothes吉服 of those who enter the court.” The regulation of the former was carried out by the 『Goryeosa高麗史』 <yeji禮志> Hyung-rye凶禮, the government official class in their spare time 백관급가, and by the enforcement of criminal law 『Goryeosa高麗史』 <Hyungbeobji刑法志> 公式.. The spare time of the management class was not based on 『Shuyi書儀』; rather, it was ordered in “compliance with the system依制 of Obokgeubgasik 五服給暇式: compliance with Oejomosik依外祖父母式, compliance with the Songje依宋制, compliance with Oejomorye 依外祖父母例,” and so on. In the long run, 『Shuyi書儀』 dictated the contents utilized of the mourning

ceremony(喪儀).

In the Goryeo period, whe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Shuyi書儀』 emerged, the real prescriptive power of 『Zhou-li周禮』, 『li-ji禮記』, and 『Yi-li 儀禮』 in China was insufficient. Its successive influence is difficult to ascertain from the time of the Silla新羅 period 『Shuyi書儀』 as a system of Song宋.

After all, 『Shuyi書儀』 makes up the real prescriptive power of courtesy; the real conformability of the Goryeo period was secured with the foundation of traditional succession under the Silla era. It was established by Sangjonggogumre(詳定古今禮) at Uijong(毅宗). We can therefore understand the history of courtesy from the Early Goryeo period.

Key Words : 『Shuyi書儀』, 『Goryeosa』 yeji禮志, Hyung-rye, Choi-yunui崔允儀, 『Sangjonggogumre詳定古今禮』, Du-youjin杜有晉, Zheng-Yuqing 鄭餘慶, 『Datang-xinding-jixiong-shuyi大唐新定吉凶書儀』, 『Zhou-li周禮』, 『li-ji禮記』, 『Yi-li儀禮』, letter model texts 書札體式, a ritual ceremony儀注